

# 14. 그 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

## 운영현황

(2023년 1/4분기)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
### 1. 휴직급여

#### 1) 휴직급여 지급기준

임원

해당사항 없음

정규직(일반정규직)

사유	급여 지급기준	지급기간	근거규정
업무상 공상	-	-	-
업무의 질병	○ 기본연봉의 70% ○ 기본연봉의 50%	○ 1년 이하 ○ 1년 초과 2년 이하	급여규정 제7조 (휴직자의급여)
병역 휴직	-	-	-
고용 휴직	-	-	-
유학 휴직	기본연봉의 50%	2년 이내	급여규정 제7조 (휴직자의급여)
연수 휴직	기본연봉의 50%	2년 이내	급여규정 제7조 (휴직자의급여)
육아 휴직	-	-	-
가족 간호 휴직	-	-	-
해외 동반 휴직	-	-	-
(기관고유사유)	-	-	-

정규직(무기계약직)

사유	급여 지급기준	지급기간	근거규정
업무상 공상	-	-	-
업무의 질병	○ 기본연봉의 70% ○ 기본연봉의 50%	○ 1년 이하 ○ 1년 초과 2년 이하	급여규정 제7조 (휴직자의급여)
병역 휴직	-	-	-
고용 휴직	-	-	-
유학 휴직	기본연봉의 50%	2년 이내	급여규정 제7조 (휴직자의급여)
연수 휴직	기본연봉의 50%	2년 이내	급여규정 제7조 (휴직자의급여)
육아 휴직	-	-	-
가족 간호 휴직	-	-	-
해외 동반 휴직	-	-	-
(기관고유사유)	-	-	-

비정규직

사유	급여 지급기준	지급기간	근거규정
업무상 공상	-	-	-
업무의 질병	○ 기본연봉의 70% ○ 기본연봉의 50%	○ 1년 이하 ○ 1년 초과 2년 이하	급여규정 제7조 (휴직자의급여)
병역 휴직	-	-	-
고용 휴직	-	-	-
유학 휴직	기본연봉의 50%	2년 이내	급여규정 제7조 (휴직자의급여)
연수 휴직	기본연봉의 50%	2년 이내	급여규정 제7조 (휴직자의급여)
육아 휴직	-	-	-
가족 간호 휴직	-	-	-
해외 동반 휴직	-	-	-
(기관고유사유)	-	-	-

## 2) 휴직급여 지급현황

임원  
해당사항 없음

정규직(일반정규직)  
해당사항 없음

정규직(무기계약직)  
해당사항 없음

비정규직  
해당사항 없음

## 2. 퇴직금

### 1) 퇴직금 적립 및 지급 기준

임원

항목	내용	근거규정
퇴직금 적립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</li> <li>○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</li> </ul>	퇴직급여규정 제6조
장기근속자 퇴직수당, 특별위로금 지급기준	-	-
경쟁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	-	-
명퇴수당,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	-	-
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	<p>1.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(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.) 또는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.</p> <p>가.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: 퇴직급여의 4분의 1 나.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: 퇴직급여의 2분의 1</p> <p>2. 금품 및 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,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</p> <p>가.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: 퇴직급여의 8분의 1 나.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: 퇴직급여의 4분의 1</p>	퇴직급여규정 제9조의1

정규직(일반정규직)

항목	내용	근거규정
퇴직금 적립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</li> <li>○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</li> </ul>	퇴직급여규정 제6조
장기근속자 퇴직수당, 특별위로금 지급기준	-	-
경쟁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	○ 포함	퇴직급여규정 제2조
명퇴수당,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년잔여기간 1년이상 5년이내 = 기본급/2 x 정년잔여월수</li> <li>○ 정년잔여기간 5년초과 10년이내 = (기본급/4) x 정년잔여월수</li> <li>○ 정년잔여기간 10년초과인 경우 = 정년잔여기준 10년 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</li> </ul>	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시행요령 제5조
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	<p>1.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(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.) 또는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.</p> <p>가.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: 퇴직급여의 4분의 1 나.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: 퇴직급여의 2분의 1</p> <p>2. 금품 및 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,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</p> <p>가.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: 퇴직급여의 8분의 1 나.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: 퇴직급여의 4분의 1</p>	퇴직급여규정 제9조의1

정규직(무기계약직)

항목	내용	근거규정
퇴직금 적립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</li> <li>○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</li> </ul>	퇴직급여규정 제6조
장기근속자 퇴직수당, 특별위로금 지급기준	-	-
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	○ 포함	퇴직급여규정 제2조
명퇴수당,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년잔여기간 1년이상 5년이내 = 기본급/2 x 정년잔여월수</li> <li>○ 정년잔여기간 5년초과 10년이내 = (기본급/4) x 정년잔여월수</li> <li>○ 정년잔여기간 10년초과인 경우 = 정년잔여기준 10년 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</li> </ul>	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시행요령 제5조
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	<p>1.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(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.) 또는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.</p> <p>가.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: 퇴직급여의 4분의 1  나.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: 퇴직급여의 2분의 1</p> <p>2. 금품 및 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,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</p> <p>가.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: 퇴직급여의 8분의 1  나.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: 퇴직급여의 4분의 1</p>	퇴직급여규정 제9조의1

비정규직

항목	내용	근거규정
퇴직금 적립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</li> <li>○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</li> </ul>	퇴직급여규정 제6조
장기근속자 퇴직수당, 특별위로금 지급기준	-	-
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	○ 포함	퇴직급여규정 제2조
명퇴수당,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년잔여기간 1년이상 5년이내 = 기본급/2 x 정년잔여월수</li> <li>○ 정년잔여기간 5년초과 10년이내 = (기본급/4) x 정년잔여월수</li> <li>○ 정년잔여기간 10년초과인 경우 = 정년잔여기준 10년 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</li> </ul>	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시행요령 제5조
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	<p>1.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(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.) 또는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.</p> <p>가.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: 퇴직급여의 4분의 1  나.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: 퇴직급여의 2분의 1</p> <p>2. 금품 및 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,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</p> <p>가.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: 퇴직급여의 8분의 1  나.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: 퇴직급여의 4분의 1</p>	퇴직급여규정 제9조의1

2) 퇴직금 가산 지급기준

임원

해당사항 없음

정규직(일반정규직)

- 해당사항 없음

정규직(무기계약직)

해당사항 없음

비정규직

해당사항 없음

3) 퇴직금 가산 지급현황

임원

해당사항 없음

정규직(일반정규직)

해당사항 없음

정규직(무기계약직)

해당사항 없음

비정규직

해당사항 없음

### 3. 휴가 및 휴직

#### 1) 휴가 운영기준

임원

해당사항 없음

정규직(일반정규직)

(단위: 일)

공가 구분		공무원 복무기준	기관운영기준	
경조사 휴가	결혼	본인	5일	
		자녀	1일	
	배우자출산		10일	10일
	입양		20일	20일
	사망	배우자	5일	5일
		본인.배우자의 부모	5일	5일
		본인.배우자의 조부모· 외조부모	3일	3일
	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일	3일
		본인.배우자의 형제자매	1일	1일
	출산 휴가 (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)		90일 (120일)	90일 (120일)
여성 보건휴가		매월 1일(무급)	매월 1일(무급)	
방통대 출석		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	-	
재해구호휴가		5일	5일	
유산/사산휴가	임신기간 15주 이내	10일	11주 이내 5일/12주 이상 15주 이내 10일	
	임신기간 16~21주	30일	30일	
	임신기간 22~27주	60일	60일	
	임신기간 28주 이상	90일	90일	
	배우자 유산/사산 시 남성 공무원	3일	-	
난임치료	인공수정	2일	3일(최초 1일은 유급)	
	체외수정	3일(배아이식) 4일(난자채취)	3일(최초 1일은 유급. 여성직원의 체외시술은 최초 2일 유급)	
	정자채취	1일	-	
포상 휴가		10일	5일	
가족돌봄휴가 -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(자녀가 2명 이상, 장애인, 해당공무원이 한부모인 경우)		10일(무급) - 2일까지 유급 (3일까지 유급)	10일(무급) - 2일까지 유급 (3일까지 유급)	
임신검진휴가		10일	1. 임신기간이 28주 이내 : 4주 당 1회 2. 임신기간이 29주에서 36주까 지 : 2주당 1회 3. 임신기간이 37주 이후인 경 우 : 1주당 1회	
기타 불가항력으로 출근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때		-	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14일	
기타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		-	별도 사유 발생시 산정	
기타 재난/비상상황시		-	이사장 별도 산정	

정규직(무기계약직)

(단위: 일)

공가 구분		공무원 복무기준	기관운영기준
경조사	결혼	본인	5일

휴가		자녀	1일	1일	
		배우자출산		10일	10일
	입양		20일	20일	
	사망	배우자		5일	5일
		본인.배우자의 부모		5일	5일
		본인.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	3일	3일
	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	3일	3일
본인.배우자의 형제자매		1일	1일		
출산 휴가 (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)			90일 (120일)	90일 (120일)	
여성 보건휴가			매월 1일(무급)	매월 1일(무급)	
방통대 출석			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	-	
재해구호휴가			5일	5일	
유산/사산휴가	임신기간 15주 이내		10일	11주 이내 5일/12주 이상 15주 이내 10일	
	임신기간 16~21주		30일	30일	
	임신기간 22~27주		60일	60일	
	임신기간 28주 이상		90일	90일	
	배우자 유산/사산 시 남성 공무원		3일	-	
난임치료	인공수정		2일	3일(최초 1일은 유급)	
	체외수정		3일(배아이식) 4일(난자채취)	3일(최초 1일은 유급. 여성직원의 체외시술은 최초 2일 유급)	
	정자채취		1일	-	
포상 휴가			10일	5일	
가족돌봄휴가 -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(자녀가 2명 이상, 장애인, 해당공무원이 한부모인 경우)			10일(무급) - 2일까지 유급 (3일까지 유급)	10일(무급) - 2일까지 유급 (3일까지 유급)	
임신검진휴가			10일	1. 임신기간이 28주 이내 : 4주 당 1회 2. 임신기간이 29주에서 36주까지 : 2주당 1회 3. 임신기간이 37주 이후인 경우 : 1주당 1회	
기타 불가항력으로 출근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때			-	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14일	
기타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			-	별도 사유 발생시 산정	
기타 재난/비상상황시			-	이사장 별도 산정	

비정규직

(단위: 일)

공가 구분		공무원 복무기준	기관운영기준	
경조사 휴가	결혼	본인	5일	
		자녀	1일	
	배우자출산		10일	10일
	입양		20일	20일
	사망	배우자		5일
		본인.배우자의 부모		5일
		본인.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	3일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	3일		
본인.배우자의 형제자매		1일	1일	
출산 휴가 (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)			90일 (120일)	90일 (120일)
여성 보건휴가			매월 1일(무급)	매월 1일(무급)
방통대 출석			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	-
재해구호휴가			5일	5일
유산/사산휴가	임신기간 15주 이내		10일	11주 이내 5일/12주 이상 15주 이내 10일
	임신기간 16~21주		30일	30일
	임신기간 22~27주		60일	60일
	임신기간 28주 이상		90일	90일
	배우자 유산/사산 시 남성 공무원		3일	-
난임치료	인공수정		2일	3일(최초 1일은 유급)
	체외수정		3일(배아이식)	3일(최초 1일은 유급. 여성직원

		4일(난자채취)	의 제외시술은 최초 2일 유급)
	정자채취	1일	-
포상 휴가		10일	5일
가족돌봄휴가 -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(자녀가 2명 이상, 장애인, 해당공무원이 한부모인 경우)		10일(무급) - 2일까지 유급 (3일까지 유급)	10일(무급) - 2일까지 유급 (3일까지 유급)
임신검진휴가		10일	1. 임신기간이 28주 이내 : 4주 당 1회 2. 임신기간이 29주에서 36주까 지 : 2주당 1회 3. 임신기간이 37주 이후인 경 우 : 1주당 1회
기타 불가항력으로 출근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때		-	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14일
기타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		-	별도 사유 발생시 산정
기타 재난/비상상황시		-	이사장 별도 산정

## 2) 공무원 복무규정 외 휴가

임원

해당사항 없음

정규직(일반정규직)

(단위: 일)

휴가사유	일수
기타 불가항력으로 출근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때	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14일
기타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	별도 사유 발생시 산정
기타 재난/비상상황시	이사장 별도 산정

정규직(무기계약직)

(단위: 일)

휴가사유	일수
기타 불가항력으로 출근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때	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14일
기타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	별도 사유 발생시 산정
기타 재난/비상상황시	이사장 별도 산정

비정규직

(단위: 일)

휴가사유	일수
기타 불가항력으로 출근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때	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14일
기타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	별도 사유 발생시 산정
기타 재난/비상상황시	이사장 별도 산정

## 3) 장기근속 휴가/휴직제도 운영기준

임원

해당사항 없음

정규직(일반정규직)

해당사항 없음

정규직(무기계약직)

해당사항 없음

비정규직

해당사항 없음

## 4) 근무시간 중 체육·문화의 날 등 운영기준

임원

해당사항 없음

정규직(일반정규직)

해당사항 없음

정규직(무기계약직)

해당사항 없음

비정규직

해당사항 없음

기준일	2022년 12월 31일	제출일	2023년 04월 18일
-----	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

기관 공시 담당자

구분	담당자명	부서명	전화번호
작성자	원은혜	경영지원본부 인재경영실	042-865-8885
감독자	손주영	경영지원본부	042-865-8870
확인자	한상문	감사부	042-865-8920